

[후속 보도자료]

**“노조법 개정 대통령 거부권 반대 및 조속한 공포 촉구!  
노동자 목소리 가로막는 경찰폭력 규탄!  
인권단체·노동안전보건단체 기자회견” 열어**  
… 11/16(목) 오전 10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

• 발신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약칭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제목	[후속 보도자료] 노조법 개정 대통령 거부권 반대 및 조속한 공포 촉구! 노동자 목소리 가로막는 경찰폭력 규탄! 인권단체·노동안전보건단체 기자회견 열어
• 수신	귀 언론사 사회부
• 문의	민선(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인권운동사랑방) 010-8644-5799 나래(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010-4713-9816 김혜진(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010-4538-0051
• 분량	총 9쪽

---

1. 공정보도와 민주언론 수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천 속에서 진행한 <노조법 개정 대통령 거부권 반대 및 조속한 공포 촉구! 노동자 목소리 가로막는 경찰폭력 규탄! 인권단체·노동안전보건단체 기자회견> 후속 보도자료를 보내드립니다.
2. 수많은 노동자의 목숨을 건 투쟁으로 20년 만에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11월9일 본회의에서 통과 됐지만, 어렵게 통과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통해 무력화하겠다는 입장들이 발표되는 상황입니다.
3. 기자회견에서 인권단체·노동안전보건단체 활동가들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조할 권리와 파업할 권리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의의를 짚으며 노조법 개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였습니다. 더불어 거부권에 반대하며 11월 13일 종교계의 단식농성 돌입과정에서 있었던 경찰폭력의 문제와 함께 11월 11일 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를 마치고 행진과정에서 연행됐던 활동가의 당시 증언과 규탄이 이어졌습니다. 끝으로 오늘로 단식 3일차를 맞는 운동본부 공동대표 남재영 목사님의 규탄과 결의 발언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였습니다.
4. 발언문과 사진을 첨부한 후속 보도자료를 배포하니, 보도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저지하고 개정 노조법 쟁취를 위한 운동본부의 활동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및 진행 순서 -

- 제목 : 노조법 개정 대통령 거부권 반대 및 조속한 공포 촉구! 노동자 목소리 가로막는 경찰폭력 규탄! 인권단체·노동안전보건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11월 16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 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진행 순서》

- 사회 : 박상은 (플랫폼C 활동가)
- 발언
  - 노동3권과 노조활동 권리를 위한 노조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 엄진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 집행위원)
  -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노조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 김미숙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김용균재단 이사장)
  - 11.11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 진행 후 연행된 상황 증언과 경찰 폭력 규탄 : 정동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 11.13 현장 상황 증언과 경찰 폭력 규탄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 단식자 발언 : 남재영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대전 빈들공동체 목사)
- 개정 노조법 즉각 공포! 즉각 시행! 촉구 선언 발표

※ 개정 노조법 공포 촉구 선언문 및 선언자 명단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329개 단체, 2908명 개인이 선언에 함께 연명하였습니다.  
선언에 함께 한 명단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bit.ly/개정노조법공포촉구선언명단>

[첨부]

1- 개정 노조법 즉각 공포! 즉각 시행! 촉구 선언

2- 발언문

(1) 노동3권과 노조활동 권리를 위한 노조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 엄진령

(2)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노조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 김미숙

(3) 11.11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 진행 후 연행된 상황 증언과 경찰 폭력 규탄 : 정동은

(4) 11.13 현장 상황 증언과 경찰 폭력 규탄 : 명숙

(5) 단식자 발언 : 남재영

3- 기자회견 진행 사진

## [첨부]1- 개정 노조법 즉각 공포! 즉각 시행! 촉구 선언

### 대통령은 거부권 운운하지 말고 즉각 노조법 개정을 공포하라!

지난 11월 9일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동안 노조법 개정에 관해 어떤 논의도 진행하지 않고 반대 입장만을 고수해왔다. 본회의 표결시 퇴장하더니, 개정 노조법에 대해 대통령실에 거부권(대통령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요청할 것이라며 입법기관인 국회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의 입법권이 헌법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가 권력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것이지,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 행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자유권위원회 등에서도 비정규직,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노조법의 개정을 권고해왔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대법원 판례를 준용하여 사용자 개념을 실질적 지배력과 영향력이 있는 자로 구체화했다. 그동안 재벌 대기업들은 다단계 산업구조의 정점에서 막대한 이윤을 가져가면서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나 노동조건, 안전 등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최소한의 인간적 처우를 요구하며 원청과 교섭을 하려고 해도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니라며 원청은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기 바빴다. 지금도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원청이 교섭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지지부진한 교섭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사용자 정의에서 진짜 사장인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은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부합한다. 물론 노동자 정의 개념은 여전히 제한적이기에 부족함이 있지만, 그간 진짜 사장인 원청의 책임을 요구하며 싸워온 시간 속에 이번 개정을 이루어낸 것이다.

노조법 3조 개정안은 어떠한가. 그간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수십, 수백억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노조할 권리를 탄압해온 현실을 바꾸자는 것이 개정 취지다. 노조법 3조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이지만, 현실에서는 쟁의행위를 가로막는 수단으로 쓰여왔다. 아쉽게도 이번 개정안은 소위 쟁의행위에 대해 다수의 노조 조합원이 공동으로 연대해서 저야 한다는 '부진정연대책임'을 막는 것으로 한발 나아갔지만, 여전히 근본적으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개정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노조법 3조 개정으로 산업현장에 불법과 폭력이 난무할 것이라는 거짓선동으로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이는 재벌 대기업에게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잘못된 노조법의 관행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추는 것일 뿐이다. 배달호 열사를 비롯해 어마어마한 손해배상의 무게로 죽어간 노동자들을 기억하며 이러한 악의적 선동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다시 한번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운운하는 정부와 여당에 경고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은 헌법과 국제기준의 최소기준을 담았을 뿐이다. 그런데도 경제 혼란 등 거짓선동을 하며 행정부가 경총 등 재벌 대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시도 때도 없이 시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을 막아 온 것은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행정부의 남용이다. 그런 남용 속에서 짓밟히고 있는 노동자 권리를 위한 노조법 2조·3조 개정은 더욱 필요하다.

**우리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하라!**  
**반인권 반노동적인 정책과 선동을 중단하라!**

2023년 11월 16일

“개정 노조법 즉각 공포! 즉각 시행!” 촉구 선언자 일동  
(329개 단체 및 2908명 개인)

## [첨부]2-발언문(1) 노동3권과 노조할 권리를 위한 노조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엄진령)

이번 노조법 개정은 끈질긴 투쟁을 통해 겨우겨우 자신의 권리를 찾아 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그리고 걸핏 하면 정부에 의해 불법파업으로 낙인부터 찍혀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 받아왔던 모든 노동자들에게 부족하나마 숨통을 틔워주는 것입니다.

이 개정으로 노동자들은 나의 노동을 이용하고 그로부터 이윤을 얻는 원청 자본을 상대로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단지 단체협약 체결 시기로 국한되지 않는,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행동권 행사의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손실을 넘어 모든 경영이윤을 회수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행해왔던 자본의 손배청구를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작지만 노조할 권리가 모든 노동자들에게 열리는 길이 되고, 아직 노동3권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에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주어질 것입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더 크다는 점이 여전히 갑갑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행정관청의 개입으로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허가제처럼 운용되는 실태가 잔존해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혐오의 말들을 붙여 이익집단으로 몰아붙이는 시도가 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고,

이것은 더 나은 사회를 향해 펼쳐질 수 있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오로지 “직접적인 노동조건” 으로만 국한하고자 하는 노조법에서 기인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노동3권의 행사를 겹겹이 가로막는 교섭창구단일화, 조정전치주의와 같은 제도들로 인해,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여전히 파업권의 행사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난관이 존재합니다.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직 바꾸어야 할 것들이 우리 노조법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노동3권은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어야 할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입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권리, 무한 이윤 추구를 위해 인간의 삶과 환경을 파괴하는 자본에 맞서 투쟁할 수 있는 권리, 그로써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노동3권입니다.

결사의 자유 보장이야말로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일부의 빈곤이 아닌 모두의 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은 지난 역사 속에서 인류가 얻어낸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 교훈이 국제사회의 약속이 되고, 사회의 당연한 원리로 자리잡기까지 수많은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돌이켜 우리의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 역시 그랬습니다. 화물노동자, 조선하청노동자와 같은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맞서 싸우며 손배가압류라는 탄압의 극악함을 알려낸 노동자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 많은 투쟁과 연대의 힘으로 우리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라는 결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작지만 유의미한 변화가 만들어지는 이 때에, 대통령이 당연한 듯이 거부권을 이야기합니다. 국회 통과까지도 많은 것이 깎여 나갔는데, 그마저도 거부권 행사 운운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생산현장이 불법으로 판을 칠 것이라며 자본의 목소리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산업현장의 평화가 노조가 없는 것이라면, 노동자들이 숨을 죽여야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타인의 빈곤과 굴종을 강요하여 만들어낸 거짓 평화일 뿐입니다.

노동자도 국민입니다. 대다수 국민의 삶과 노동을 존중하지 않고 자본의 이해만 대변하는 대통령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동3권에 대한 이해가 심각하게 결핍된 고용노동부 장관 또한 자격이 없습니다.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변화의 길을 막지 말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평화의 길을 막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루 속히 개정 노조법을 공포할 것을 촉구합니다.

## [첨부]2-발언문(2)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 위한 노조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김미숙)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업에 의해 노동자들이 상당한 부당함을 당하고 억울한 처지가 되면서 혼자 싸울 수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다단계 하청 노동자일수록 더 열악하고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적 모순이 만들어집니다.

비정규직이었던 아들 용균이가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입사한지 4일만에 현장에 급하게 투입되었습니다.

1.2k로나 되는 긴 거리를 밤낮으로 혼자서 점검하러 다녔다고 합니다. 아들이 사고를 당한지 3일째 되던 날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확인하고자 사고 현장을 들어갔습니다. 현장은 낮인데도 어두컴컴했고 탄가루가 어지러히 널려있는 가운데 군데군데 무덤처럼 낙탄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거기다 컨베이어벨트를 이동시키는 회전체가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 모두 안전 커버도 없어서 조금만 실수해도 팔려 들어가 죽을 밖에 없는 너무나 위험천만한 현장이었습니다.

기계 한 대가 아파트 15층 높이였고 맨 꼭대기 사고당한 장소를 갔는데 폴리스라인은 간데없고 회사는 이미 물청소로 증거를 없애버린 상태였습니다. 내가 이런 회사를 믿고 아들을 보낸 것도 분통이 터지고 너무나 열악한 현장에서 아들이 일한 것도 모르는 죄책감이 너무도 참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들이 비정규직이었기 때문에 심각한 차별에 의한 국가가 만든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아들은 노조원도 아니었습니다.

빈소 앞에 아들이 피켓든 사진을 볼 때 처음에는 왜 저런 사진을 찍었을까 하며 제가 노조를 겪지 못한지라 낯설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문제인 대통령 만나 비정규직 문제 해결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사고 전 용균이 동료들이 28번이나 위험 시정 요구를 했으나 원청은 본인들 직원이 아니라고 묵살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입사한지 채 3개월도 안된 용균이가 자신의 위험한 처지를 바꾸기 위해 살기위한 몸부림으로 피켓을 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마다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회사에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입사원에게는 더더욱 반드시 해야 할 일인데도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헤드랜턴도 지급받지 못했고 사고 당시 기계를 멈춰줄 사람이 없기에 안전 줄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때 원청이 28번의 위험신호만 묵살시키지 않았더라면 애지중지 키운 아들을 잃는 아픔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청 비정규직들의 부당한 처우개선을 위해 반드시 원청과 교섭권이 있어야 하고 거액에 손배폭탄으로 더 이상 억울한 인명 피해가 없도록 손배폭탄 방지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 이상 노동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비정규직들을 불법으로 간주해서 일생을 차압당하거나 죽게 만드는 악행은 반드시 이땅에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회사의 재산권이 중요한 이상으로 개개인에 재산이나 생명 안전권을 보장해주는 것은 이 나라가 가장 최우선으로 지켜야할 의무이니만큼 우리가 하도록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열사들과 당사자들이 강렬하게 싸워왔듯이 우리도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꺾박 받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때 까지 힘차게 싸워서 해결해봅시다.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을 당장 멈추길 바랍니다.

[첨부]2-발언문(3) 11.11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 연행 상황 증언과 경찰 폭력 규탄 : 정동은

정동은 활동가는

장애인 노동권을 가로막으며 현재 추진되는 정책에 대한 비판과

11월 11일 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에서 발생했던 경찰폭력,

연행된 후 유치장에서 활동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부적절하고 모욕적인 태도로 일관한

경찰에 대한 비판하고 규탄하는 발언을 힘차게 해주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와

당일 생중계 링크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남대문서, 활동가들 폭력 연행... 전장연 “국가배상 청구할 것” (비마이너 기사.2023.11.15)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5655>

\* 해고는 살인이다! 증증장애인 400명 해고사태 고발! 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

□일시 : 2023.11.11(토) 오후 1시

□장소 : 독립문역 5번출구

□생중계(페이스북): <https://fb.watch/oeKmcSuSX8/?mibextid=cr9u03>

□보도자료: <https://sadd420.notion.site/400-a3effd45e31b46f4b5408452bda0f846?pvs=4>

## [첨부]2-발언문(4) 11.13 현장 상황 증언과 경찰 폭력 규탄 : 명숙

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활동가입니다. 지금 기자회견을 하는 이 장소에는 펜스가 두겹 세겹으로 쳐져있습니다. 안전을 중요시하는 공항검색대나 국회도 이러지는 않습니다.

단지 노조법 2,3조 개정을 대통령이 거부하지 말라는 요구로 단식농성장을 쳤다고 이릅니다. 지금 면세점 오른쪽에 쳐져있는 천막에 무기가 있습니까? 당식자들이 폭력을 썼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 천막을 치기까지 3일이 걸렸습니다. 저 펜스 안은 사유지인데도 경찰이 건물주인 동화면세점과 감리교단에게 마치 종교인들이 난장판을 벌이고 폭력을 방해하는 양 거짓말을 하며 시설보호요청을 받아냈습니다. 그후로 경찰차 20대를 둘러싸고 검문검색을 하고 농성물품을 막는다고 소지품까지 검색하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천막도 바닥깔개도 가져갔습니다. 이 추운 밤 단식자인 남재영 목사님은 비닐 침낭한 개와 한장 덮고 잤습니다. 농성이 범죄입니까!

경찰이 지난 5월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출퇴근시간대 집회는 안 된다, 노숙농성은 안된다고 말한 이후 경찰이 서울 전역에 출퇴근 시간대 행진과 노숙농성을 막고 있습니다. 2009년과 2014년 헌재 판결이후 집시법과 헌법에서는 시간대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경찰이 내놓은 집회시위 개선방안, 출퇴근 야간집회금지 법집행과 헌법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실제 펜스 바깥인 민주노총이 내놓은 이곳 집회는 농성천막도 못 치게하고 밤 12시면 경찰이 강제해산시킵니다. 사유지는 건물주에게 사실을 알려주어 천막을 칠 수 있었습니다만, 밖을 공유지임에도 경찰의 불법적 탄압으로 농성을 못합니다.

왜 경찰이 이렇게까지 합니까! 노조법이 개정되면 재벌의 편에서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을 조금밖에 못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인권탄압으로 힘들기에 거리로 나올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부자는 감세하고 핵오염수는 방류하는 정부를 규탄하려고 집회를 할수밖에 없으니 이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경찰의 탄압에서 알 수 있듯이, 집회시위의 자유와 노동조합할 권리는 밀접하게 연관되어있습니다.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권리 특별보고관이 있는 것에서도 알수 있습니다. 결사의 권리란 정당이나 노조처럼 모여서 단체를 만들어 활동할 권리입니다.노동3권이 결사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뭐하겠습니까. 모여서 기득권세력, 기업권력에 맞서 외치고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쟁의행위만이 아니라 집회시위도 할수밖에 없습니다. 노조법 개정 투쟁처럼 노동자의 투쟁은 집회시위의 권리를 지키는 투쟁일수밖에 없습니다.

인권활동가들은 대통령 거부권을 막아내고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만이 아니라 집회시위의 권리를 지키는 실천도 함께 하겠습니다.

## [첨부]2-발언문(5) 단식자 발언 : 남재영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감리교 목사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는 이 우리가 흔히 동화면세점이라고 알고 있는 이 빌딩은 동화면세점 빌딩이기도 하지만 기독교 대한 감리교회 감리교회의 본부가 있는 빌딩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반반씩 감리교회와 종합 면세지 및 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이 건물을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저희는 감리교 목사로서 사회적 아젠다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편하게 여기 와서 텐트를 쳤습니다.

텐트를 치고 우리가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노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9일날 국회를 통과하고 남아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결국은 노조법운동본부에서는 있는 힘을 다 쏟아서 법권을 반대하는 그런 행동과 목소리를 높여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인들이 노조법 2,3조 운동본부에 참여한 이유가 있습니다.

1970년 11월 13일 지금부터 53년 전 전태일 열사께서 돌아가셨을 때 기독교 입장에서 돌아가신 전태일 열사가 노동조합 이 시대에 예수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감수성으로 사회적 약자나 특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동행해온 종교인들은 비정규직의 지난 현실들을 보면 끊임없이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짓밟고 타살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사회적 타살의 그 행렬을 멈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 가장 첫 발 그것이 노조법 이상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그 노조법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모든 현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법은 되지 못합니다.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은 어떤 현실이든 어떤 이유로든지 윤석열이 반대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그 법을 통과시켜야 함 그 절박함 때문에 종교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도지.

그래서 13일날 이 광화문 교단본부 앞에 텐트를 치고 우리가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경찰이 저놈들이 들어와서 저렇게 종교인들을 저렇게 능멸하는가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경찰놈들이 사기를 쳤어.

민주노총 선발대가 동화면세점 앞에 가가 사기를 칠 거라고 텐트를 칠 뻔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통합면세원들이 일대가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그러니 당신들이 우리에게 시설 보호 요청을 하면 우리가 지켜주겠다 이런 도적놈 같은 말을 막 합니다.

민주노총을 악마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민주노총 선발대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은퇴할 날 며칠 안 남았어요. 오랫동안 목회해 온 내가 아니 교단 들어가서 탱크 치고 기도하는데도 경찰놈들한테 그렇게 발목을 잡히고 떡살을 잡혀야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까. 전도사가 경찰들한테 연행을 당하고 말이에요. 정말 속에 끓는 말은 많지만 왜 민주노총을 악마화하고, 종교와 민주노총 관계를 그렇게 이간질시키고 왜 그러는 겁니까. 노조법 2,3조 이 법을 그렇게 통과시키는 게 뭐가 그렇게 무섭단 말입니까. 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사는 건 고사하고 좀 노동자답게 살겠다는 것도 허용을 못하는 게...

오늘 아주 할 말은 많고 가슴이 떨리지만 비도 오고 해서 이 선에서 그치려고 합니다.

종교인들이 절박하게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것이 통과되기를 기도하는 이유는 이 법이 생판 모르는 사람들 남을 위한 법이 아닌 천만 비정규직 노동자 다 우리 가족들 아닙니까 우리 형제예요.

우리 부모하고 우리 자녀들이 남이 아니란 말이야 내 또 다른 영혼이 헌법이 통과됨으로써 나도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노조법 개정이 비정규직 노동자들 노동의 권리 기본적인 것들 다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아주 조금밖에 못 지켜 줍니다. 그러나 그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는 윤석열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윤석열이 무슨 짓을 하든 이 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3-기자회견 진행사진

